

규정류(개정)입안서

1. 규정류명 : 직제규정
2. 규정류(제정·개정)사유 :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로 개편됨에 따라, 사업 전반에 사용 중인 'RISE' 명칭을 '앵커'로 변경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 : 제3조(조직) 머. RISE사업단을 머. 앵커사업단으로 변경
4.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: 공포일로부터 시행
5. 참고사항
 - 가. 관련규정:
 - 나. 예산조치:
 - 다. 관련부서: RISE사업단
6. 첨부사항
 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(개정시) 1부.
 - 나. 규정류(개정)안 전문 1부.

2026년 8월 3일

소관부서 : 기획처

홍 정 화

관련부서 : RISE사업단

주 윤 황

신·구조문대비표

규정명 : 직제규정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1조~제2조(생략)	제1조~제2조(현행과 같음)	
제3조(조직) 머. RISE사업단 <신설 2025.6.20.>	제3조(조직) 머. 앵커사업단 (개정 2026.00.00)	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로 개편됨에 따라, 사업 전반에 사용 중인 ‘RISE’ 명칭을 ‘앵커’로 개정하고자 함.
제4조~제14조(생략)	제4조~제14조(현행과 같음)	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	

직제규정

공포 제2026- 2호(개정 2026. 6. 30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정관 제7장 및 장안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2장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행정조직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하여 법령, 정관, 학칙 및 기타 본 대학교의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2장 조직 및 정원

제3조(조직) ① 본 대학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기구를 설립 또는 폐쇄할 수 있다.

1. 대학본부 (시행 2020.1.21.) (개정 2024.3.8.)

- 가. 부총장
- 나. 교무처
- 다. 기획처
- 라. 입학처
- 마. 학생지원처
- 바. 산학협력처
- 사. 총무처

2. 부속기관

- 가. 학술정보관
- 나. 정보전산원 (개정 2025.4.29.)
- 다. 교육방송국
- 라. 학보사
- 마. 예비군대대
- 바. 교수학습개발센터
- 사. 교육혁신지원센터 (명칭변경 2023.2.13.)
- 아. 취·창업지원센터 (명칭변경 2023.2.13.)
- 자. 학생상담센터
- 차. 인권·성평등센터 (명칭변경 2023.2.13.)
- 카. <삭제 2023.2.13.>
- 타. 현장실습지원센터
- 파. 대학일자리센터 (개정 2020.8.1.)
- 하. 원격교육지원센터 (신설 2020.12.22.)
- 거. <삭제 2024.3.8.>
- 너. 농업실습교육원 <신설 2025.4.29.>
- 더. 미디어홍보센터 <신설 2025.4.29.>
- 러. 대학혁신지원사업단 <신설 2025.6.20.>
- 머. **앵커사업단 (개정 2026.00.00)**
- 버. IR센터 <신설 2025.6.20.>
- 서. 성인학습지원단 <신설 2025.9.25.>
- 어. 국제교류원 <신설 2025.9.25.>
- 저. AI교육지원센터 <신설 2026.4.21.>
- 처. 장애학생지원센터 <신설 2026.6.30.>

3. 부설기관

가. 평생교육원

나. 연구소 또는 연구 관련 센터

다. 원격평생교육원

라. 산학협력단 (개정 2023.2.13.)

마. <삭제 2025.9.25.>

바. 한국어교육원 <신설 2025.9.25.>

② 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, 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. (시행 2020.1.21.) (개정 2024.3.8.)

③ 처에는 분장 업무별로 과 또는 팀을 둔다.

④ 각 처장(총무처장은 제외) 및 실장,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임명하고, 총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일반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, 과장 또는 팀장은 일반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4.3.8.)

⑤ 학술정보관은 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 제6조, 제9조,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세부적인 사항은 「학술정보관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 <신설 2025.4.29.>

1. 학술정보관 운영과 관련한 학술정보관 예산, 조직, 자료의 수집 및 관리,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
2.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4.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사항

제4조(정원) 본 대학교 교직원의 정원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.

제3장 교·직원

제5조(교원 및 직원) ① 본 대학교에 교원 및 직원, 조교를 둔다.

②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등의 전임교원과 겸임교수, 초빙교수, 특임교수, 명예교수, 강사 등 비전임교원으로 한다. (개정 2024.3.8.)

③ 직원은 일반직, 기술직, 계약직으로 하되, 각 행정부서별 정원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(개정 2024.3.8.)

④ 조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(개정 2024.3.8.)

제6조(총장)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.

제7조(직무대행) 총장의 궐위 시에는 부총장이, 부총장의 궐위 시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예비군대대) 예비군대대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부속기관 및 부설기관) 각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직제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사무분장)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제4장 학과

제11조(학과) ① 본 대학교는 학칙의 규정에 의한 학부 및 학과를 둔다.

② 각 학부 및 학과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0.12.22.)

제5장 보직교원의 임기

제12조(보직교원임기의 목적) 본 대학교의 보직교원의 임기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3조(보직교원임기의 임기) ① 보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. 다만, 총장이 교내 교수에서 임용된 경우에는 정년 전에 임기만료 또는 해임되면 소속학과 교수로 자동 복직된다. (개정 2024.3.8.)

③ (삭제 2024.3.8.)

제14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 (신설 2024.3.8.)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임명되어 있는 보직자의 임기는 그 임명일로부터 기산하며, 임기가 지난 보직교원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개정 2020.3.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21일 정관개정일로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.

제2조(소관사무 및 부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기획실, 입학팀의 소관 사무는 직제규정,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각 기획처와 입학처에서 승계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당시 기획실, 입학팀의 근무자는 별도 인사명령시까지 각 기획처, 입학처 소속 근무자로 본다.

제3조(종전의 사무행정행위 및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 기획실, 입학팀에서 시행된 문서 및 사무행정 행위들은 해당 사무를 승계한 기획처, 입학처에서 시행된 사무행정 행위들로 본다.

제4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, 제6조제1호나내지라목, 같은조제4호가목의 “기획실”을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② 리더십과 행정관리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호, 제6조제3호가목나, 같은조제4호가목, 같은조제5호나목, 제7조제4호나목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③ 사회적 책무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④ 특성화 및 발전계획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, 제5조제1호가목과 마목, 제6조제2호다목, 서식제1호 경영및재정부문 담당부서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⑤ 장안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①항의 “본교에는 행정부서로 교무처, 학생지원처, 산학협력처, 총무처, 기획실, 그 밖에 필요한 부서들”은 “본교에는 행정부서로 기획처, 교무처, 입학처, 학생지원처, 산학협력처, 총무처, 그 밖에 필요한 부서들”로 한다.

⑥ 내부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⑦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5절 기획실, 제10조(기획실) 기획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.”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⑧ 위임전결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위임전결사항 업무내용의 “기획실” 위임전결 사항을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⑨ 제규정류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⑩ 제규정류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⑪ 제안제도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, 제11조제④항, 제25조의 관리부서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⑫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⑬ 교원의 역량개발 및 급여·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, 제6조제4호내지6호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⑭ 자체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②항, 제8조제②항과 같은조제③항의 “기획실장”은 “기획처장”으로, 제7조제④항, 제12조내지제14조제①항, 제17조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⑮ 자체평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, 제6조제1호, 제7조제1호, 제9조제1호내지제3호, 제10조의 자체평가보고서 관리부서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⑯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, 제5조제1호나목, 같은조제8호가목과 나목, 같은조제9호, 제6조제1호와 제2호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⑰ 학생생활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④항, 제6조 역할 및 조치사항의 내용 “원활한 대외연론 대응을 위해 기획실과 긴밀히 협조”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⑱ 대학발전기금조성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①항내지제③항, 제10조제②항내지제④항, 제12조, 제13조제②항, 제15조제②항과제④항, 제16조의 “기획실장”은 “기획처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③항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⑲ 재정계획 및 재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, 제6조제2호가목내지다목, 제8조제2호내지제5호의 보고부서, 제12조 관리부서의 기획실은 기획처로 한다.

㉔ 연수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②항, 제7조, 제8조, 제9조의 “기획실장”은 “기획처장”으로 한다.

㉕ 연수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제11조의 “기획실장”은 “기획처장”으로 한다.

㉖ 산학협력교육활동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내지제2호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㉗ 규정심의위원회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②항의 “기획실장”은 “기획처장”으로 한다.

㉘ 대학정보공시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의 기획실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㉙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⑤항의 “기획과(팀)장”은 “기획처 직원”으로 한다.

㉚ 학과구조조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“기획실”은 “기획처”로 한다.

제5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(이 규정 시행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정을 포함한다)에서 부칙 제2조제①항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승계이전의 소관 부서, 소관 부서장, 소관 부서직원이 소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승계 이후 부서의 부서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(개정 2020.8.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20년 4월 20일 이후 산학협력처 대학일자리센터와 관련된 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제3호거목은 2020년 9월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관사무 및 부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교무처, 학생지원처의 소관 사무는 직제규정,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처에서 승계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교무처, 학생지원처의 근무지는 별도 인사 명령시까지 산학협력처 소속 근무자로 본다.

제3조(종전의 사무행정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교무처, 학생지원처에서 시행된 문서 및 사무행정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한 산학협력처에서 시행된 사무행정행위로 본다.

제4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(이 규정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정을 포함한다.)에서 부칙 제2조 제1항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승계 이전에 소관 부서, 소관 부서장, 소관 부서직원이 소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승계 이후 부서의 부서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이 규정 시행 당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소속은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이 규정 시행 당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소속은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개정 이전의 직제사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